

내수면어업 허가신청서
(자망어업·종묘채포어업·연승어업·패류채취어업·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용)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발급일	처리기간	5일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어업의 종류						
어업의 방법과 어구의 명칭						
어구의 규모	(m, 폭, 통, 기타)					
조업구역	일원					
사용어선	선명	톤수	기관	마력	선질	진수 연월일
포획·채취물의 종류						
허가를 받으려는 기간	부터		까지		(년간)	

「내수면어업법」 제9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내수면어업 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수면의 위치도 1부(낭장망어업 및 각망어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양식장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양식을 목적으로 종묘채포어업을 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수수료는 조례에 따름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선박국적증서, 선적증서 또는 등록필증(어선을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뒤쪽에 동의서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